

공지사항

북방교류관련 지침 및 요령 안내

1. 북방국가와의 통상에 관한 요령 (상공부 고시 제90-38호)

제1조(목적) 이 요령은 대외무역법, 북방교류 협력에 관한 기본지침 및 북방경제교류조정에 관한 지침에 의거하여 북방국가와의 통상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서 통상질서를 유지하고 상호간의 경제협력을 효과적으로 추진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적용범위) ① 이 요령에서 “북방국가”라 함은 북방교류협력에 관한 기본지침의 적용대상 국가를 말한다.

② 이 요령에서 “통상”이라 함은 수출입, 제조업투자와 지사설치, 전시회참가 및 개최 등의 경제교류를 말한다.

제3조(통상질서유지) ① 북방국가와 통상을 하는자는 이 요령에 의한 절차를 준수하여야 하며, 통상질서를 유지할 책임을 진다.

② 무역업자 등은 대외무역법 제47조의 규정에 따라 북방국가에 대하여 수출입의 질서유지를 위한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4조(수출입) ① 북방국가로부터 산업설비를 수주하고자 하는자는 대외무역관리규정 제6-0-5조 및 제6-0-6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상공부장관에게 산업설비수주계획을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산업설비수주계획신고 및 신고의 수리에 대하여는 대외무역 관리규정 제6-0-6조 및 제6-0-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산업설비수출협회장”은 “상공부장관”으로 본다.

③ 북방국가가 시행하는 국제입찰에 관하여 대외무역관리규정 제7-3-2조의 참가승인을 얻고자 하는자는 동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상공부장관의 참가승인을 얻어야 한다.

④ 제3항의 국제입찰참가승인에 대하여는 대외무역관리규정 제7-3-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⑤ 북방국가에 미화 1백만불 상당액 이상의 물

품을 수출(F.O.B기준) 또는 수입(C.I.F기준)하고자 하는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체결전에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상공부장관에게 신고(신고서 3부제출)하여야 한다.

⑥ 제5항의 신고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즉시 상공부장관에게 신고(신고서 3부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제조업투자) 북방국가의 제조업 분야에 미화 1백만불 상당액 이상의 투자를 하고자 하는자는 다음 각호의 기간내에 그 계획을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상공부장관에게 신고(신고서 3부제출)하여야 한다. 투자금액이 불분명하거나 투자행위가 단계별로 이루어지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합작투자의 경우 상대방의 의향서 또는 양해각서 체결전
2. 단독투자의 경우 당해국가에 대한 협약신청전

제6조(지사설치) ① 통상을 목적으로 북방국가에 지사 또는 사무소를 설치하고자 하는자는 당해국가에 신청서 등을 제출하기 전에 상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얻고자 하는자는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승인신청서 4부를 상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전시회참가) ① 북방국가에서 개최되는 전시회 또는 박람회 등(이하 “전시회”라 한다)에 참가하거나 북방국가에서 전시회를 개최하고자 하는자는 당해국가에 신청서 등을 제출하기 전에 상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얻고자 하는자는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한 승인신청서 3부를 대한무역진흥공사를 통하여 상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북방국가여행등) 통상을 목적으로 한 우리 국민의 북방국가 여행 및 북방국가 국민의 초청에 관한 절차는 북방교류협력에 관한 기본지침 및 북방경제교류조정에 관한 지침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공지사항

제9조(업무협력협정체결) 통상을 목적으로 북방 국가의 정부기관, 단체 또는 기업과 공동사업, 업무협력 등에 관하여 협의각서 또는 협정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에 사전에 그 계획을 상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0조(조정명령) ① 상공부장관은 북방국가와의 통상질서가 교란되거나 교란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 요령의 신고 또는 승인대상이 되는 사항에 대하여 그 주체·시기·내용·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조정을 명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정명령은 제11조에 규정된 북방통상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조정의 대상이 되는 사안이 경미한 것이거나, 긴급을 요하는 것일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상공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조정방안을 북방경제교류조정에 관한 지침의 규정에 의한 경제교류조정위원회의 심의에 상정토록 할 수 있다.

제11조(북방통상조정위원회 설치) ① 북방국가와의 통상의 조정에 관한 심의를 위하여 상공부는 북방통상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상공부 제1차관보로 하며, 상시위원은 상공부상역국장 및 통상진흥국장과 대한무역진흥공사 무역정보본부장 및 한국무역협회 전무로 하고, 비상시위원은 심의사항과 관련된 상공부의 공업국장 및 단체의 장으로 한다.

제12조(제재조치) 상공부장관은 북방국가와의 통상에 있어 이 요령이 규정하는 사항을 준수하지 않거나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조정명령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그 위반의 내용과 정도에 따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제재조치를 취하거나 관계기관에 제재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1. 위반사항에 대한 주의 또는 경고
2. 북방경제교류조정에 관한 지침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제재조치

3. 대외무역법의 규정에 의한 제재조치

부 칙

(시행일) 이 요령은 고시일로부터 10일을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과조치) 이 요령 시행일전에 제4조 제1항 및 제5항의 신고대상이 되는 사항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한 자로서 대외무역법에 의한 수출입 승인 또는 산업설비 수출승인을 얻지 아니한 자는 이 요령시행일로부터 20일이내에 그 계약내용을 상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기준지침의 폐지) 이 요령의 시행과 동시에 북방교류협력에 관한 상공부문 세부지침('90. 1. 25)은 이를 폐지한다.

2. 북방국가에 대한 수출·입과 제조업투자 신고수리 및 조정지침

1. 목적

이 지침은 "북방국가와의 통상에 관한 요령"(이하 "요령"이라 함, 상공부고시 제90-38호, 90. 12. 3) 제4조(수출입) 및 제5조(제조업투자)의 규정에 의거한 신고수리, 참가승인 및 이에 관한 조정기준과 절차를 정함으로서 북방교역 질서를 유지하여 무역진흥에 기여코자 함.

2. 적용범위

가. 적용대상 국가

소련, 중국, 베트남, 캄보디아, 라오스, 쿠바, 알바니아.

나. 신고대상의 범위

1) 산업설비 수주계획 신고대상

미화 30만불(F. O. B기준) 이상의 산업설비수출 수주계획

2) 국제입찰 참가승인 신청대상

미화 200만불(F. O. B기준) 상당액 이상과 입찰공고서상 입찰품목이 여러 품목인 경우 동 공고서상 입찰총액이 200만불(F. O. B기

공지사항

준) 상당액 이상의 국제입찰

3) 물품의 수출입

미화 100만불(수출 F.O.B, 수입 C.I.F 기준)

상당액 이상의 물품의 수출과 수입

4) 제조업 투자

가) 미화 100만불 상당액 이상의 제조업 투자

나) 투자금액이 불분명하거나 단계별로 투자
하는 사업

3. 신고수리 범위 및 조정기준

가. "요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설비 수주계획신고, 국제입찰참가 승인신청 및 물품의 수출입 신고수리(참가승인)업체의 범위는 2개 업체를 원칙으로 하며, 과당경쟁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3개업체 이상도 신고수리(참가승인) 할 수 있음.

나. 수주계획 신고업체의 다수경합으로 과당경쟁이 있을 경우 업체간 자율합의 조정을 원칙으로 하고, 자율합의가 안될 경우 상공부가 별도의 검토기준에 의거 조정, 적격업체 선정

4. 산업설비 수주계획의 신고 및 국제입찰의 참가승인

"요령" 제4조의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산업설비 수주계획의 신고 또는 국제입찰의 참가에 필요한 절차, 신고수리 및 참가승인의 기준, 사후보고, 기타신고 또는 승인에 관한 사항은 대외무역 관리규정에 따름.

5. 물품의 수출입 신고

가. 신고기간

물품의 수출입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수주(계약체결) 예정일로부터 30일이내에 상공부장관에 신고하여야 하며, 상공부장관은 신고일로부터 20일이내 수리여부 통보.

나. 신고서류

"요령"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북방국가(수출·수입)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상공부장관에게 신고

1) 사업계획서 1부.

2) 계약체결의 이행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1부.

3) 제조업자와의 공급확인서 1부.

4) 기타 필요한 서류.

다. 조정수리

물품의 수출신고 업체간 자율합의가 안될 경우 다음의 검토기준에 의거 적격업체를 선정하여 수리함.

〈검토기준〉

가) 당해국의 당해품목 및 기타품목의 수출실적

나) 당해품목의 생산시설보유(계열사포함) 유무

다) 시장개척, 시장확보 여부 및 시장유지 필요성

라) 당해국의 해외투자 진출 및 지사설치 여부

마) 대외무역거래로 질서위반에 따른 주의, 경고 및 제재 유무

바) 해외공관장, 해외무역관장 추천 여부

사) 중소기업형 품목에 대한 중소기업의 우선 고려

라. 신고수리의 유효기간

수주계획의 신고수리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여도 수주(계약체결)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당초 신고수리는 효력을 상실함.

마. 수주(계약) 예정일 변경시 조치

수주(계약) 예정일이 당초 신고기간 이전에 변경된 경우 변경된 수주(계약)일자를 기준으로 신고기간을 재산정하고, 당초 신청기간 경과 후 변경된 경우 당초 신청기간을 그대로 적용

바. 수주(계약) 내용의 변경

신고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 "요령"제2호 서식에 의거 즉시 상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기 신고된 사항의 중요한 내용변경으로 당초신고 내용과 동일성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 새로이 신고하여야 함

6. 제조업 투자

가. 신고수리시 검토사항

1) 신발 : 신발업종 해외투자 허용기준을 적용함(출이 28120-398, '90. 3. 10)

공지사항

2) 기타업종

- 가) 투자 현지국에서 아국 기업간 과당경쟁 가능성 여부 판단
- 나) 비교우위업종으로서 기술이전 여부
- 다) 대공산권수출통제위원회 관련업종 저촉 여부
- 라) 국내 동종업계의 사업기반을 현저하게 약화시키는지의 여부
- 마) 관련단체에서 해외투자를 제한요청하여 상공부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한 업종
- 바) 유혹시설 이전 및 수출기여도(기자재 연계수출여부)

나. 신고수리 방법

- 1) 6항 다호의 신고수리시 검토사항을 감안하여 투자사업의 수리여부를 결정함
- 2) 신고수리전에 유관, 단체 및 상공부내 관련 공업국의 의견이 필요할 경우 검토를 의뢰함

다. 조정기준

- 1) 대 상 : 6항의 라호의 신고수리 방법에 의한 신고수리를 할 수 없는 투자사업

2) 조정기준

- 가) 업종별 해외투자협의회 및 종합상사협의회 등을 활용하여 사전 자율조정을 원칙으로 함

- 나) 민간업계의 자율조정이 안될 경우에는
- 산업 및 무역정책과 연계 검토
- 지역별, 업종별, 투자의 분산유도

다) 구체적인 검토기준

- 투자하고자 하는 업종의 국내 생산시설 보유여부 및 제품생산 여부
- 투자사업 추진 시점
- 투자하고자 하는 품목의 3개년도 수출실적 및 기자재 연계수출 여부
- 투자하고자 하는 품목의 해외투자 경험 여부

라. 신고수리의 유효기간

해외투자 신고수리를 받은자는 신고수리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합작투자는 의향서 체결,

단독투자는 상대당 국가로 부터 허가를 받아야 하며 그렇지 않는 경우 그 효력을 상실함

7. 실효성 확보

- 가. 외국환은행은 북방국가에 대한 상공부장관의 산업설비수출 수주계획의 신고수리, 물품의 수출입신고수리, 국제입찰참가승인을 필요직 구비서류로 정구하도록 의무화 함
- 나. 제조업투자 허가기관은 북방국가에 대한 상공부장관의 제조업투자 신고수리를 필요직 구비서류로 정구하도록 의무화함

8. 제제조치

“요령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다음에 따라 제재조치, 단 불이익조치를 병과할 수 있음

가. 제재대상

- 1) “요령” 및 상공부장관의 조정명령을 위반한 자
- 2) 대외무역법을 위반한 자

나. 제재내용

- 1) 위반사항에 대한 주의 또는 경고조치
- 2) 북방교류 조정에 관한 지침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제재조치
- 가) 출입국 등 각종 인·허가의 규제
- 나) 해외투자자금, 연불수출자금, 국외차입
인가 등 각종 금융지원의 제한
- 다) 수출보험 인수의 제한
- 3) 대외무역법 규정에 의한 제재조치
- 가) 일정기간동안 수주계획 신고수리의 중지
- 나) 일정기간의 응찰가격 정지
- 다) 수출승인 금지조치 및 수출지원 중단
- 라) 일정기간의 무역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

9. 사후관리

“요령” 제4조 규정에 의한 신고수리(참가승인)
업체는 다음 각호 기간내에 상공부장관에게
수주(계약체결) 여부 등에 관한 결과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공지사항

- 가. 산업설비수출 수주계획 신고수리업체 : 입찰일 (수의계약은 수주 예정일)로 부터 20일 이내 (별지 1호 서식)
- 나. 국제입찰참가 승인업체 : 입찰일로 부터 20일 이내(별지 2호 서식)
- 다. 물품의 수출입 신고수리업체 : 수주예정일로 부터 20일 이내(별지 3호 서식)

10. 보완조치

이 지침에 불구하고 상공부장관은 북방국가와의 통상질서 유지를 위하여 별도의 필요 한 조치를 취할 수 있음

11. 경과조치

이 지침 시행일 이전에 상공부장관이 북방 국가와의 수출입에 대하여 신고수리(국제입찰참가승인)한 사항은 이 지침에 의하여 행 한 것으로 간주함

12. 시행 일

이 지침은 1990. 12 일부터 시행함

3. 북방경제교류조정에 관한 지침에 따른 해 외투자사업 신고 요령(재무부)

1. 신고 대상

- 북방국가에 대한 1백만불 이상 해외투자사업
- 다만, 투자금액이 불분명하거나 투자행위가 단 계별로 이루어질 경우에는 모두 신고

2. 신고 시기

- 합작사업인 경우 상대방과의 의향서 또는 양해 각서 체결이전, 단독투자사업인 경우에는 상대 방 국가에 대한 허가신청 이전인 사업계획 검토 초기단계

3. 신고 내용

- 별첨 양식에 따라 투자업종, 합작상대방, 투자 지역, 투자예상규모, 자금조달방법, 추진경과 등을 신고

등을 신고

4. 신고 절차

- 사업시행 주체가 투자업종을 관장하는 주무부처에 신고

5. 신고처리 절차

- 신고를 접수한 주무부처는 접수후 2일이내에 신 고 내용을 북방경제교류조정위원회에 통보
- 주무부처는 신고된 사업내용을 검토하여
- 조정이 필요치 않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신고 접수후 10일 이내에 신고수리서를 사업시행 주체에게 교부
-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신고접수 후 10일 이내에 동 사실을 사업시행 주체에 통보한 후 조정방안을 작성하여 조정위에 상 정
- 주무부처는 사업내용을 검토함에 있어 자금조 달 방법이 해외증권발행 또는 현지금융 차입 을 포함할 경우에는 신고수리여부 결정 이전 에 재무부와 협의

'91년도 국민투자기금중 기술개발 및 품질 향상 특별사업 고시안내

국민투자기금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91년도 국민투자기금중 기술개발 및 품질향상 특별사업을 다음과 같이 고시하였으니 회원사업부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민투자기금중 기술개발자금 지원계획〉

1. 지원개요

가. 목적

- 기술개발 및 개발기술의 사업화 지원

- 기업의 자동화 및 정보화 사업 지원

- 나. '91년 규모 : 400억원(국민투자기금 2,000억 원중)

공지사항

다. 금융대상

국민투자기금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7호의 기술개발사업 또는 품질향상 특별사업으로서 주무부장관이 고시한 사업을 하는 자
(상공부고시 제91-8호)

라. 융자금리 : 년 10.5%

마. 융자기간

○ 시설자금 : 8년이내(3년거치)

○ 운전자금 : 3년이내

바. 융자비율 : 소요자금의 범위내

사. 업체별 대출신청한도 : 10억원 이내

아. 융자취급은행

주택은행, 수출입은행 및 외국은행 국내지점을 제외한 전 금융기관

※ 기타 응자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금융기관에 문의

2. 기술개발 및 품질향상특별사업 대상

[상공부 고시 제-8호]

국민투자기금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7호에 의한 기술개발 및 품질향상특별사업을 다음과 같이 고시한다.

1991. 2. 20.

상공부장관

기술개발 및 품질향상 특별사업 고시

국민투자기금중 기술개발 및 품질향상자금을 아래와 같이 지원한다.

1.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과제(품목, 기술)를 개발하거나 사업화하는 자

가. 상공부장관이 생산기술발전 5개년계획의 시행계획으로 공고한 기술개발 과제

나. 상공부장관이 공업기반기술사업으로 공고한 기술개발과제

다. 상공부장관이 기계류·상품 및 소재 국산화 개발대상품목으로 고시한 품목

라. 기술개발촉진법 제8조의 2의 규정에 의해 지원을 받는 국산신기술제품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의 규정에 의해 과학기술처 장관이 고시한 기술

마. 기술개발촉진법 제8조의 3에 의한 특정연구 개발사업과제

바. 특히 받은 국내기술 및 실용신안으로 등록된 고안

사. 상공부장관이 고시한 첨단산업 업종의 기술개발 또는 개발된 기술의 사업화

2.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가. 정보화 추진 및 생산성향상을 위하여 공장자동화, 사무자동화, 전산망의 구성 및 공정개선을 하려는 기업으로서 한국생산성본부, 중소기업진흥공단, 생산기술연구원, 한국과학기술연구원, 한국기계연구소, 서울대학교부설 자동화시스템 공동연구소의 추천을 받은 자

나. 공업발전기금 및 중소기업구조조정기금을 지원받아 기술개발을 완료한 품목을 사업화하려는 기업으로서 공업발전기금 운용관리요령 및 중소기업 구조조정기금의 기술개발자금 지원요령에서 정한 취급기관의 추천을 받은 자

다.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의한 창업투자회사 또는 신기술사업금융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신기술사업 금융회사로부터 추천을 받은 자

라. 전산망 보급확장과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시행령 제14조에 의해 공동통신사업자가 전산망사업의 지원을 위하여 설립한 법인

마. 환경오염 방지를 위한 방지시설 및 폐기물처리시설(재생이용시설 포함)

관련기술을 개발하려는 자로서 환경관리공단 이사장의 추천을 받은 자

바. 기타 주무부장관이 기술개발 및 품질향상을 촉진하기 위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추천한 자

공지사항

附 則

1.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2. 상공부 고시 제90-5호는 이를 폐지한다.

〈1991년도 국민투자기금 지원요령〉

1. 세부운용계획
2. 일반요령

(단위 : 억원)

부문별	세부운용계획	용도	금액
1. 중화학 공업			1,600
	가. 국산기계구입 (일반기계) (리스용 기계) (농·축산기계)	시 설	1,050 (300) (400) (350)
	나. 계획조선 (내항선) (어선)	시 설	150 (60) (90)
	다. 기술개발	시 설 · 운전	400
2. 연불수출		운전	200
3. 식량증산사업		시 설	200
합계			2,000

- 가. 응자취급 금융기관은 원칙적으로 연내에 인출 가능한 금액에 한하여 대하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대하승인령(1990년도 승인령 포함)의 연내인출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대하승인일로부터 1년이내에 인출하여야 한다.
- 나. 동일사업에 대하여 2회이상 분할하여 대하승인 신청하는 경우 차회 대하승인 신청은 전회 대하승인령의 80%이상이 대출실행된 후 신청하여야 한다.
- 다. 대하승인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최초인출이 없는 경우에는 대하승인 취소된다.
- 라. 각 부문의 대하승인 또는 인출상황을 감안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전한도확인을 실시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한도확인일로부터 1

개월 이내에 대하승인신청 또는 인출청구가 없을 때에는 동 한도확인은 취소된다.

- 마. 시설자금의 경우 시설재의 수입을 위한 자금(도입부대비용 포함)과 대지구입 및 조성자금은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 바. 응자취급금융기관은 이사회결의 등 최종 내부의사결정절차를 필한 후 대하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 사. 응자취급금융기관은 응자구비서류 및 응자 절차를 간소화함으로써 응자소요기간을 최대한 단축하여야 한다.

3. 부문별 지원요령

중화학 공업

가. 국산기계구입

- (1) 응자취급은행
전 금융기관(다만, 외국은행 국내지점, 주택은행 및 수출입은행은 제외)
- (2) 응자대상
국산기계류(부품 포함)를 국내생산자로부터 산업용설비로 구입하는 자 및 시설대여 산업육성법에 의하여 시설대여의 목적으로 동 설비를 구입하는 자. 다만, 금융기관 여신운용규정 제3조에서 정하는 여신금지부문 업종 해당자는 응자대상에서 제외한다.

- (3) 응자비율
소요자금의 100%이내

- (4) 업종별 대하신청한도

5억원 이내(리스회사를 통하여 지원되는 리스이용자에 대하여도 적용). 다만, 리스회사에 대하여는 동 한도제한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5) 응자금 지급

응자취급은행은 원칙적으로 국산기계구입 자금 응자금을 차주의 지급위임을 받아 생산자에게 직접 지급하여야 한다.

- (6) 중소제조업체 우선지원

응자취급은행은 국산기계구입자금을 중소

공지사항

제조업체에 대하여 우선지원하여야 한다. 또한 응자취급은행은 국산기계구입자금을 지원받은 중소제조업자에게 동 기계의 기동을 위하여 운전자금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의 응자에 노력하여야 한다.

나. 계획조선

(1) 응자취급은행 : 산업은행 및 수협

(2) 응자대상

국내조선소로부터 내항선 또는 어선을 구입하기 위하여 계획조선 실수요자로 지정된 자. 다만, 계획조선 실수요자로 지정된 자에 대한 직접응자가 조선업자의 부도 등 불가피한 사유로 지연되는 경우에는 선박인도 시 체무를 실수요자에게 이전하는 조건으로 그 실수요자를 위하여 선박을 건조하는 타 조선업자에 대하여 응자를 할 수 있다.

(3) 응자비율

소요내자의 80%이내

다만, 외자를 포함한 응자지원액이 총 선가의 90%를 초과할 수 없다.

다. 기술개발자금

(1) 응자취급은행 전 금융기관(다만, 외국은행 국내지점, 주택은행 및 수출입은행은 제외)

(2) 응자대상 국민투자기금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7호의 기술개발 사업 또는 품질향상특별사업으로서 주무부장관이 재무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
(상공부고시 제91-8호)

(3) 응자비율 : 소요자금의 100% 이내

(4) 업체별 대하신청한도 : 10억원 이내

연불수출

가. 응자취급은행 : 수출입은행

나. 응자대상 및 응자비율

한국수출입은행법, 동법시행령 및 동은행 업무처리방법서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

식량증산사업

가. 응자취급은행 : 농협

나. 응자대상

정부가 지정하는 농업기계를 구입하는 실수요자(단위농업협동조합 포함)

다. 응자비율 : 소요자금의 90% 이내

〈1991년도 국민투자기금 분기별 자금집행 계획〉

-'90년도 자금 지원실적 및 '91년도 자금수요를 고려하여 분기별로 자금을 균형 지원함으로써 정부부문 통화공급의 적정화를 도모함.

(단위 : 억원)

부문별	'90계획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1. 종합학공업	1,600	425	410	410	355
가. 국산기계구입	1,050	275	275	275	225
(일반기계)	(300)	(75)	(75)	(75)	(75)
(리스용기계)	(400)	(100)	(100)	(100)	(100)
(농·축산기계)	(350)	(100)	(100)	(100)	(50)
나. 계획조선	150	50	35	35	30
(내항선)	(60)	(20)	(15)	(15)	(10)
(어선)	(90)	(30)	(20)	(20)	(20)
다. 기술개발	400	100	100	100	100
2. 연불수출	200	50	50	50	50
3. 식량증산사업	200	100	100	-	-
합계	2,000	575	560	460	405
비율(%)	100.0	28.8	28.0	23.0	20.2

뉴질랜드의 국제입찰안내

뉴질랜드국의 쿡·아일랜드 통신시설사업 입찰에 관한 공지를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관심있는 업체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 1) 입찰국 : 뉴질랜드 쿡·아일랜드
- 2) 입찰기관 : 쿡·아일랜드

공지사항

- 3) 품 명 : Statellite Earth Station 설치
Project
- 4) 입찰 일 : '91. 4.
- 5) 입찰관인세부사항 : 별도 구입료 (NZ\$100)
- 6) 문의처 : 상공부 수출입과
(503-9439)

(Tel 750-3423/4)

특별외화대출 한도확인내용 변경업무 취급기준 통보안내

한국은행으로부터 표제기준이 제정되어 동내용을 안내하니 특외대 한도확인 변경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관심있는 업체는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레이디 단말장치 이중화용 부대장비 구매 안내

본회에서는 한국공항관리공단에서 공항관리의 효율화를 위하여 '91년도 김포국제공항 레이다 단말장치 이중화용 부대장비구매를 계획하고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회원 업체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처 : 한국공항관리공단 관리부
(Tel 660-2314)

전화요금 단말기 수납시스템 기술수요 안내

본회의 한국통신에서 추진하고 있는 On-Line 시스템 처리 전화요금 수납계획을 다음과 같이 알려 드리오니 회원사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개요

- 수작업으로 진행되는 전화요금 수납업무를 ON-LINE 시스템으로 개편하여 수납기관의 단말기 의한 요금수납 및 수납원부 정리

나. 추진일정

- 실용시험 : '91. 7 ~ '91. 12

- 상용실험 : '92년도

다. 단말기 기능

- HOST와 연결요금 조회(DISPLA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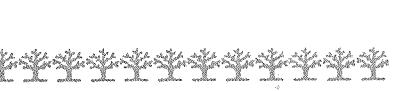
- 요금수납과 동시에 영수증 발행

- 수납정보 재발신

- 수납내역 보관 및 프린트

- 정전시에도 운용기능

- 라. 문의처 : 한국통신 재무관리실 자금국



특별외화대출 한도확인내용 변경업무 취급기준 통보안내

한국은행으로부터 표제기준이 제정되어 동내용을 안내하니 특외대 한도확인 변경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관심있는 업체는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1. 기 한도 확인내용을 변경할 수 없는 사항
-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 한도 확인내용을 변경할 수가 없음. 따라서 당초 한도확인된 내용대로 이행되는 분에 대해서만 특별외화대출로 융자취급 가능.

- (1) 기 한도 확인내용에 없는 새로운 품목(H. S. K Code 첫 4단위 기준)을 추가하거나, 수입수량을 증가하는 경우
- (2) 수입지를 일본지역으로 변경하는 경우
- (3) 해외투자금용 특별외화대출의 경우 한도확인 당시의 해외투자 사업이 해외투자 억제 대상 사업으로 변경될 경우

※ 해외투자 억제대상 사업(재무부 해무 22268-127, '90. 3. 26 및 당해 외기 6210-449, '90. 4. 4)

- ① 재무부장관이 지정하는 자율규제 대상업종 및 지역에 대한 투자 전단기를 습득을 위한 투자.

- ② 외국환관리규정 제15조-2조 제3호에 해당하는 투자 : 부동산 투자

- ③ 단순서비스업(음식점, 개인 및 가사서비스 등)에 대한 투자

- ④ 금융, 보험업 및 오락서비스업에 대한 투자

- ⑤ 개인의 해외투자

- ⑥ 국별신용도가 극히 불량한 국가에 대한 투자

2. 당행의 변경확인 불요 사항
-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행의 한도 확인내용 변경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외국환은행장이 차주로부터 그 사유를 입증하는 서류를 제출받아 관련 사실 확인후 특별외화대출로 융자취급 가능

공지사항

- (1) 한도 확인금액 범위내에서 단가 및 금액이 감액되는 경우
 - (2) 한도 확인금액 범위내에서 일부품목의 단가는 인상되고 일부품목의 단가는 인하되는 경우
 - (3) 한도 확인금액 범위내에서 수량은 감소되었으나 단가는 단가는 인상되는 경우
 - (4) 동일한 기업의 상호가 변경되는 경우로서 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등 관련 서류에 의거 그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용자취급후 상호 변경시도 동일)
 - (5) 영업의 포괄 양수도, 기업간 합병, 개인기업에서 법인기업으로의 전환, 동종 영업을 영위하기 위한 별도법인의 설립 등으로 변경되는 경우로서 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등 관련 서류에 의하여 그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용자취급후 동 사유에 의한 차주변경시도 동일)
 - (6) 실제 수입품목에는 변경이 없으나 한도확인 신청 당시의 상품분류(H.S. 번호)의 착오로 이를 정정하는 경우로서 수입승인서에 의해 등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
 - (7) 수입품목의 변경없이 수입지만을 변경하는 경우 다만, 일본 이외의 지역으로 변경하는 경우에 한함.
 - (8) 한도 확인금액의 표시 통화를 변경하는 경우
 - 미달러화 표시금액을 기타통화 표시금액으로 변경시 : 당초 한도확인 당시의 용자추천서 금액이 당해통화로 표시된 경우에 한함.
 - 기타통화 표시금액을 미달러화 표시금액으로 변경시 : 당초 한도확인 당시 미달러화 부기금액을 초과하지 않을 경우에 한함.
 - (9) 한도확인 신청 당시 중소기업을 대기업으로 잘못 분류한 경우(한도 증액은 허용되지 않으며 당초 한도 확인금액 범위내에서 용자취급 가능)
3. 당행의 변경확인을 요하는 사항
- 다음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당행으로부터 기 한도확인 내용의 변경확인을 받아야 특별외화대출로 용자취급 가능

고도기술의 소프트웨어 관세감면 확인요령 안내

제1조(목적) 이 요령은 관세법제28조의 제1항 제15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19조제7항의 규정에 의해 산업용으로 수입되는 고도기술의 소프트웨어가 수록된 마그네틱 테이프 또는 디스크의 관세감면에 관한 확인요령을 규정함으로써 국내 산업기술 개발과 고도기술의 소프트웨어 국산화를 촉진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요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소프트웨어”라 함은 특정한 결과를 얻기 위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 능력을 가진 장치 내에서 직접 또는 간접으로 사용되는 지시·명령으로 표현된 것과 이를 작성하기 위하여 사용된 관련자료를 말한다.
2. “고도기술의 소프트웨어”라 함은 관세법시행령제15조의2의 첨단기술산업 중 재무부령이 정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자가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소프트웨어를 말한다. (기술도입형태로 수입하는 것 포함)
3. “산업용”이라함은 관세법시행규칙제17조 제2항, 제4항 및 기술개발촉진법 제8조의3에 규정한 기관 및 연구소 등이 연구, 개발을 목적으로 도입하는 것을 제외한 산업활동에 필요한 용도의 것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요령은 고도기술의 소프트웨어의 실수요자 및 동실수요자에게 소프트웨어를 제공하는자에 한하여 적용된다.

제4조(확인배제) 이 요령에 의한 제반요건을 구비한 경우라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대하여는 확인에서 배제한다.

1. 국내에서 이미 개발되어 상품화가 된 소프트웨어
2. 정부의 자금 혹은 기술을 지원받아 상품화를 진행중인 소프트웨어
3. 단순 수입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소프트웨어
4. 기타 상공부장관이 국내 산업기술개발 촉진

공지사항

을 위하여 특별히 인정하는 소프트웨어

제5조(관세감면 신청) 산업용 소프트웨어를 도입하고자 하는자가 관세감면을 받고자 할때는 별지 1호의 서식에 의한 고도기술소프트웨어 관세감면확인서 3부와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상공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수입허가(승인)신청서 1부
2. 물품매도확인서 또는 Offer Sheet 1부
3. 카다로그 또는 관련 증빙서류
4. 제 4조제 1호 및 제 2호에 대한 한국S/W 산업협회 회장이 발급하는 별지 2호의 국내 상품화 관련여부 기술검토서 1부
5. 기타 상공부장관이 동 확인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제6조(기술검토) 상공부장관은 신청된 소프트웨어 기술에 대하여 필요시 관련기관 및 전문가의 기술검토를 받아 처리할 수 있다.

제7조(관세감면 확인 유효기간) 이 고시에 의한 소프트웨어관세감면 확인서의 유효기간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추천일부터 30일까지로 한다.

수출용 원자재 기준소요량 고시 개 확인 대상품목에 대한 의견문의

공진청에서는 대외 무역관리규정 제 5 - 3 - 2 의 규정에 의거 기준소요량으로 고시된 품목에 대해서는 수출용 원자재 기준소요량 업무 운영요령 제 6 조의 규정에 의거 3년마다 개 확인을 하도록 하고 있는 바, '91년도 개 확인 대상품목을 안내하오니 회원사의 해당 품목에 대하여 공업진흥청 소요량관리과(503-793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동화설비자금 및 첨단·기술개발자금 대출취급기준 안내

'91 한국산업은행 업무계획에 의하여 신설된 자동화설비자금과 첨단기술개발자금의 운용을 위한 산업은행 대출취급기준을 안내하오니 회원사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산업은행 대출규정(대출취급요강)

가. 자동화설비자금('91: 2,500억원)

○ 자동화의 정의 : 각종 기기를 제어하거나 생산 공정을 시스템화함으로써 생산성과 품질의 향상을 기하는 것.

○ 대출대상

- 1) 단위자동화기기
- 2) 생산공정의 자동화설비

○ 자금용도 : 자동화설비의 구입 또는 제작설치비, 기준설비의 개체보완공사비, 설계용역비, S/W 개발 구입비

○ 대출조건 : 소요자금의 100% 이내, 이율은 「일반원화 대출금리요강」에 의함.

• 8년이내(3년거치)상환

나. 첨단산업육성자금('91: 기술개발자금과 합하여 5,000억원)

- 대상 : 첨단산업업종 영위자
- 용도 : 첨단산업업종 품목 생산시의 필요 기계·장치·설비투자 자금
- 대출조건 : 위의 자동화 설비자금과 동일

2. 우선지원사항(산업은행 내부지침)

가. 자동화 설비자금

- 업종별자동화 연구조합, 시범공장 지정업체 (200개)
- 자동화기술 보급 대상업체 ('91년: 250여개)
- 상공부지정 생산성향상 우수기업 ('90년: 32개)

나. 첨단산업, 기술개발자금

- 기술개발자금을 첨단산업자금보다 우선지원
- 기술개발자금 우선지원과제
- 핵심애로기술 개발과제, 업종별 연구조합 수행과제
- 정부출연기관과 민간기업 공동개발과제
- 생산기술발전 5년계획 과제

유관단체 파견 수출죽진단 지원 안내

KOTRA에서는 최근 국내외 수출환경 악화로 인한 수출불황타개책의 일환으로 금년중 다음과

*** 공지사항 ***

같이 중소수출업체 위주로 해외시장 개척단을 파견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KOTRA에서는 69개국 80개무역관을 통하여 수출유관단체의 수출촉진단 파견시 현지 유력바이어 상담주선 및 시장정보 제공 등 각종 수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관심있는 회원사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91년도 KOTRA 주관 해외시장개척단 파견일정 (전기·전자 관련 일정)

개척단명	파견지역	파견시기
중남미해외시장 개척단	멕시코, 브라질, 파나마	5월
북구주해외시장 개척단	런던, 파리, 암스텔담 프랑크푸르트(뮌헨)	5월
남구주해외시장 개척단	밀라노(로마), 리스본 비엔나, 아테네	9월
서남아해외시장 개척단	카리치, 뉴델리, 콜롬보, 대카	9월
중국·동남아해외 시장개척단	북경, 홍콩, 호찌민, 방콕	10월

(1) 기한도 확인된 용자예정은행을 다른 외국은행으로 변경하는 경우 다만, 당초 한도확인받은 외국은행이 은행법상 동일인여신한도 제약 등의 사유로 용자를 취급할 수 없는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며 당초 용자추천기관의 변경추천이 있어야 함.

(2) 기한도 확인된 내용중 동종 수입품목(H.S. X Code 첫 4단위 기준)내에서 세부품목을 변경(모델 및 규격변경 포함)하는 경우 (예 : 8443, 100000→8443, 120000) 다만, 다음 충족하는 경우에 한함.

① 변경후 품목에 대하여 한국기계공업진흥회 (또는 그 위임단체)로 부터 국산대체 불가 확인을 받았을 것

② 당초 용자추천기관의 변경 추천이 있을 것

③ 당초 한도 확인금액 범위내일 것 다만, '91. 1.부터 용자비율이 낮아진 업종의 경우에는 변경된 품목 해당액에 대하여 새로운 용자비율을 적용하여 한도확인 금액을 변

경 신청하여야 함.

④ 변경 신청일이 한도확인 유효기간 이내일 것

('90. 9. 1 이후 한도확인분으로서 수입신용장 등이 유효기간내에 개설된 분의 경우에는 당해 신용장 유효기일 이내이어야 함)

(3) 기 한도 확인된 내용중 차주의 기업규모가 변경된 경우

① 한도확인 신청 당시 대기업은 중소기업으로 잘못 분류하여 한도확인을 받은 사실이 용자 취급전에 발견된 경우(기업규모 구분 및 한도 확인금액 변경 신청) 다만, 대기업을 중소기업으로 잘못 분류하여 이미 대출을 취급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에는 과다대출해당액을 즉시 회수함과 동시에 한국은행 예탁금이 있을 경우 이를 상환하여야 함.

② 한도확인시는 중소기업이었으나 용자취급 전에 대기업으로 전환된 경우(기업규모 구분 및 한도 확인금액 변경 신청)

(4) 기타 "1"항과 "2"항에서 정한 사항 이외의 사유로 기 한도확인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

4. 한도확인 변경신청서의 서식 및 절차

- 해당 연도별 특별외화대출 지원 통첩에서 서식을 사용하여 한도확인 변경신청(2부)를 작성, 당행의 당초 한도확인 취급부서(외환관리부 및 각지점)에 제출하여야 함. 다만, 용자예정은행 변경의 경우에는 변경후 용자예정은행이 변경신청서를 작성하되 당초 한도 확인받은 외국은행의 용자취급 불가사유서와 기 한도확인서 원본을 변경확인 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함.

- 한도확인 변경신청의 작성 요령은 당초 한도확인 신청서의 작성 요령과 같음.

5. 시행일 : 1991. 2. 4

"중소기업금융정보센타" 이용안내

국민생명 보험에서는 중소기업의 효과적인 자금조달을 돋기 위하여 "중소기업금융정보센타"를 설

공지사항

치, 운영하여 있습니다.

본 “중소기업금융정보센타”에서는 자금조달기법이나 정보가 부족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제조업체에 대하여 자금을 직접지원하거나 타금융기관에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돕고 있으나 관심있는 업체는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대상 : 중소기업(제조업)을 주대상으로 하고,
대기업(제조업)도 가능.

상담내용 : 회사체 인수, 상업여음할인, 대출 등
자금조달 및 윤용정보

상담기간 : 오후 3:00 ~ 오후 6:00

상담비용 : 무료

상담전화 : 722-8080 (교환) 234, 235

중국 Heilongjing Industriy (Croup)
Corporation for Semsitive Technology
회사의 합작선 참여 안내

중국 3대 민간산업체인 하나인 동 공사는 60년
대부터 반도체 부품과 Sensor, Device 등의 연구
와 생산에 종사하는 있는 비교적 높은 기술수준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으로서 모든 요건을 갖추고 있
어 이 분야에서 중국에 진출코자 하는 국내기업은
다음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반도체 부품 생산라인 안내〉

당 공사의 주요설비로는

Diffusion Furnace, Dual-Track Kasper System, Cobiltca 400 Aligners, Karlsus Auto Aligners, Varian Ion Implantor, Cha Evaporators, Atmosphere CVD, Ipcvd System, Plasma Stripper System, Plasma Stripper System, 및 각종 보조시설 등 284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설비는 최신설비이며 생산능력을 충분합니다.

동설비에 대해 미국에서는 주로 GMOS부품을
생산하였으며 하루의 생산량은 300개입니다.

생산라인을 도입한 후 동공사에서는 추가로 Electrophoretic Equipment, Processing Tester, Diagrammatical Tester 등을 설치했습니다.

건평은 2500m²로 이중 상기 생산라인을 설치한 정화공장의 면적은 750m²입니다. 설비의 도입과 아울러 高純度水 생산시스템도 도입하였는데 시간당 15Ton의 용량으로 용수로는 충분합니다.

솔트랜지스터와 중소공율고주파트랜지스터도 생산합니다. 현재 47명(평균년령 28세) 종업원중 23명이 대졸이상이고, 12명은 전문대생이며, 일반 근로자는 12명입니다.

현재는 주로 칼라 TV부분품인 저주파 고반암대
공을 삼극관(Low-Frequency Hi-Voltage
Hi-Power Transistors) 및 각종 중소·고주
파 트랜지스터와 자동차 전압조절기, 자동차 정류
막과 Rectifying Moduals For Automobile) 등을
생산하고 있습니다만 시장과 자금 등 원인으로 제
대로 가동을 못하고 있습니다. 능력있는 상공인들
께서 중국에 진출하여 임대차 경영이나 기타방식
의 학작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폐사는 책임지고 훌륭한 생산, 경영의 환경과
최대의 우대와 혜택을 드릴 것입니다.

줄구정자 계층기 국제과학회 안내

한·중 무역사무소 개설 및 중국 정부의 제8차 5개년계획 초년도인 금년에는 보다 활발한 양국간 경제교류가 예상된다. 특히, 중국 정부는 과거 2~3년간의 경제 재조정 정책에 따라 다소 경제가 침체되었으니 선진외국 기술과 장비도입 등 대외 개방정책을 강화, 대규모 기술혁신을 이룩함으로써 산업기반을 콩고한다는 전략이다.

이와 관련, 중국정부는 지금까지의 중복되고 잡다낳 국제전람회를 지양 차후 정기적이고 규모있는 전람회를 정착시키기 위하여 엄선한 전람회만을 지원토록 정책 전환을 모색중이며, 이에 (주)월드 미케팅은 홍콩 소재 전시 전문업체인 Adsale Exhibition Services LTD와 업무제휴로 중국의

공지사항

관련기관 및 유관단체가 주관하는 전자 및 계측기
관련 전문전람회를 다음과 같이 확보하고 있다.

가. 명 칭 :

*Electronics China '91

-2nd Int'l Exhibition on Electronics Components Assemblies & Production

*Instruments China '91

2nd Int'l Exhibition on Instrumentation & Automation

나. 장 소 : 중국국제전시센타(베이징)

다. 기 간 : 1991. 5. 9~14(6일간)

라. 주 최:

* 중국국제무역촉진위원회

*China National Electronic Components
& Equipment Corporation

*China National Instruments
I/E Corporation

마. 요 금 :

A. Package Stand (부대시설포함)

Option 1: 9 sqm (3M×3M) -US\$4,150

Option 2: 12 sqm (3M×4M) - US\$5,350

Option 3: 15 sqm (3M×5M) - US\$6,500

B. Row Space: US\$365/m × (Min 50m × ⚡)

며. 스탠드설치 비용은 각자 별도부담)

.바. 문의처 : (주) 월드마케팅기획실

(전화: 511-4944)